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12. 19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  
- 본 의원이 발의한  
「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」에 대하여  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  
-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의 경우,  
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 
서울시의 관광기념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,  
서울시 관광산업 극대화 도모는 물론,  
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  
- 이에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경우,  
상단에 명시된 대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,  
관광기념품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
조례의 목적과 관광기념품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,
  
- 안 제3조의 경우, 시장의 관광기념품 개발·육성을 위한  
시책과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,  
  
안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,  
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안 제6조에서 제8조의 경우,  
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,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 
안 제9조 및 제10조의 경우,  
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입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  
-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,  
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,  
평가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 
안 제13조에서 제15조의 경우,  
관광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와 통지,  
지정 효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  
- 또한, 안 제16조 및 제17조의 경우,  
관광기념품 사후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해 규정하였으며,  
제18조의 경우,  
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  
- 안 제19조의 경우,  
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  
안 제20조의 경우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 
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마지막으로 안 제21조 및 제22조를 통해,  
사무의 위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 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 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